

수탁회사 보고서

수탁회사보고서는 이 투자신탁의 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수탁회사가 이 투자신탁의 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」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1. 간접투자기구의 개요

간접투자기구명: 미래에셋맵스 아시아퍼시픽
부동산공모 1호 투자회사
유형: 부동산간접투자기구
수탁기간: 2013.01.01 ~ 2013.12.31
운용회사: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판매회사: 교보증권/대우증권/동부증권/
미래에셋생명/ 미래에셋증권

2.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| 해당없음

3.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| 해당없음

4.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| 해당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| 해당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

선임일자: 2008년2월 최초선임/ 안진회계법인
계약기간: 1년(자동연장)/감사보수: 약2300만원
*감사보수액은 결산일 현재의 펀드 총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결산일 총자산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
7. 법령 확인사항

- 투자설명서가 법령·신탁약관, 투자회사의 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|적합
-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|공정
-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|해당없음
-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가 법, 신탁약관(투자회사 정관)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수탁회사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|해당없음
-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|해당없음

8.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